

신장이식 후 사망이 공무상이라고 본 사례

(제공 : 근로복지공단)

판결요지

공무원연금법 제61조, 동법시행령 제52조의 유족보상금지급청구의 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공무원의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그 사망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직무상 과로가 발생원인에 겹쳐 유발 또는 악화되는 질병도 여기에 해당된다.

대법원 제4부, 1987. 10. 13. 판결 87누606. 상고기각

【사 건 명】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판시사항】 공무원연금법 제61조,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공무상 질병의 의의

【참조조문】 공무원연금법 제61조, 동법시행령 제5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8. 10. 31. 78누255 판결

1983. 10. 11. 82누226 판결

1987. 10. 13. 87누644 판결(동지)

【당 사 자】 원고, 피상고인 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

피고, 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원심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 5. 18. 86구12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망 이○○은 1973. 11. 10. 대구광역시 서구청 건설과 소속 지방토목기원보로 공직생활을 시작하였으며, 1981. 12. 1. 7급 승진과 함께 대구광역시 남구 상수도 사업소로 전임되어 동 사업소 공무계 주무로 종사하였는데 1980. 7. 9.부터 1981. 7. 3.까지 공무상 요양승인을 얻어 신장이식수술(1981. 1. 22.)을 받는 등의 치료를 받았으며 수술 후 경과가 양호하여 일상적으로 경미한 공·사생활에는 별다른 지장은 없었던 사실, 일반적으로 신장이식 후에는 장기간의 면역억제제의 투여 등으로 인하여 정상인보다도 혈관장애 및 고혈압 등의 증상 또는 질환의 발생가능성이 높으며 또한 고혈압이나 고혈압으로 인한 이차적인 혈관장애는 고혈압과 더불어 뇌출혈의 주요원인이 되며 특히 정신적, 육체적 피로는 뇌출혈의 가능성을 훨씬 증대시키는 사실, 대구광역시 남구 상수도사업소는 1985. 12. 30.부터 1986. 2. 28.까지 동절기상수도 시설의 동결 동파예방 및 고장시의 신속한 수리를 위하여 동절기급수대책을 세워 시행하면서 정상근무시간외 근무(평일 17:00-22:00, 토요일 13:00-22:00, 공휴일 09:00-22:00)를 위한 근무조를 편성하였던바, 위 이○○은 격일제로 조장으로 근무하면서 상황실에서 상수도고장신고에 따른 수리업무의 지휘, 감독을 함은 물론 때로는 현장에 직접 나가 그 업무를 지휘, 감독하였으며, 또한 86년도 건설공사조기발주지침에 따라 시공설계도면의 작성 등을 담당하여 이를 비

상근무중에도 계속하여 왔으며 1986. 2. 1.부터 2. 7.까지는 여관에 기숙하면서 211페이지에 달하는 급수공사기준표를 작성한 사실, 또한 원고는 1986. 2. 23.(일요일)에도 09:00경 비상근무대 기차 출근하여 비상근무에 일하면서 조기발주 작업을 위한 설계도면작성 등을 하다가 동일 20:00경 뇌출혈을 일으켜 갑자기 넘어져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동년 3. 6.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이○○의 사망은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원심의 그 조치에 수급이 가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2) 공무원연금법 제61조, 동법시행령 제52조의 유족보상금지청구의 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공무원의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그 사망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은 소론과 같으나,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직무상 과로가 발생원인에 겹쳐 유발 또는 악화되는 질병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원심도 같은 견해로 위 망 이○○의 사망은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소정의 순직에 해당한다고 단정한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공무의 사망과의 상당인과 관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법원**

주의 사례

건설현장에서의 야간작업을 마치고 작업자 3명이 소형트럭으로 건설사무소로 돌아오는 도중에 트럭이 미끄러지면서 가이드레일에 격돌하여 작업자가 부상당한 사례.

❖ 원인 ❖

1. 야간작업 종료 후의 운전으로서 운전하던 작업자가 졸음상태였던 점
2. 이른 아침인 관계로 도로가 한산하였기 때문에 과속을 한 점

❖ 대책 ❖

1. 운전전에 가면을 취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2. 운전자에게는 교통 안전수칙을 철저히 하도록 주지시킬 것

